

IT의료융합기술센터 장비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설치 공사

2024. 10.

I 공사 설명서

1. **공사명:** IT의료융합기술센터 장비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설치 공사
2. **공사범위 :** IT의료융합기술센터 3층

[세부범위 등은 공사범위 도면 참조]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4. 참가자격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7. 공사내용

- 가. IT의료융합기술센터 장비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설치
- 나. IT의료융합기술센터 장비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무선AP 설치
- 다. EPS실, 기술센터 3층 벽부 LAN포트 회선 연결 및 테스트
- 라. 모니터링용 천정형 TV브라켓 설치

II 공사 시방서

1. 일 반 사 항

-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IT의료융합기술센터 장비운용을 위한 통신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은 정보통신공사협회의 통신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현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체 적용한다
- 나.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정한 공사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다. 의의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라.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와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사. 다음의 경우 설계 및 설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설치 내용의 변경
-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설치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

2. 납품자재 및 관리

가.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제시된 규격 및 요구사항 이상(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자재는 제조사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성능향상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일 경우에도 납품 및 설치, 시험운영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동종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훼손, 분실 등의 발생 시 모든 부담 및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마. 현장에 반입 및 설치 완료 된 장비일지라도 사업 종료 전까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바. 설계내역서 상 수량 및 단가가 과다 책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 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계약자는 설치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대리인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법령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나.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설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업자를 대표하여 설치,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현장과 그 주위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부담(복구, 보상)은 사업자에게 있다.

다. 과업 중 기존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개 요

가. 작업현장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에 지정규격에 의하여 설치하며 자재 보관은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기준점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다. 복 구 : 가설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기존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하고, 파손,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라. 청소 및 뒷정리 : 본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항상 공사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때는 즉시처리 정돈하도록 한다.

마. 케이블 포설

(1) 공사에 사용되는 UTP케이블(난연형), 배관, 덕트 등 자재는 Cat.5E규격 이상의 KS규격품 자재를 사용하여 한다.

(2) 배선 시 벽 등에 부착하여 고정하고, 천정 안 배선은 CD관을 지지대에 묶어 고정한다. 모든 UTP 케이블은 통신랙에 연결되어야 한다.

(3) 영역별 다른 색깔의 케이블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무선영역: 노랑, 서비스영역: 회색 등

(4) 케이블의 양 끝단에 수축튜브 또는 케이블 랩 방식으로 구분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바. 무선AP(wireless access point) 설치

(1) 무선AP의 이름과 암호는 감독관과 협의 후 설정 한다.

(2) 무선AP의 이름과 암호는 모든AP가 동일하게 설정한다. 단,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사. 통신 장비 설치

(1) L2스위치, 공유기 등 네트워크 운용 장비는 통신랙 내부에 설치한다. 단, 벽부 LAN포트 사용을 위해 EPS실에 1대 설치하도록 한다.

(2) 통신랙 장비 설치 위치 및 순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 한다.

(3) 통신 장비 설치시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설치한다.

(4) 통신랙 내부 케이블은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종류별, 용도별, 깔끔하게 정리한다.

아. 천정형 TV브라켓 설치

(1) 천정형 브라켓 설치 위치, 높이 등은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한다.

(2) 천정속 공조덕트,트레이 등 부속품들 간섭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위치 변경 한다.

(3) 천정 브라켓 설치시 양카, 지지대 등 보강자재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한다.